

제36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 안 처 리 결 과



장 성 군 의 회

심사결과

연번	의안 번호	의안명	심사결과
1	2549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2550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3	2551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2552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2553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원안가결
6	2556	2024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가결
7	2554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8	2557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원안가결

주요내용

1. 장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10.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제안이유
 - 장성군 BI가 변경됨에 따라 형태 및 의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변경된 BI의 형태 및 의미 반영(안 제3조제3호, 별표 3)
- 의결결과 : 원안가결

2. 장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10.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민원봉사과장)
- 제안이유
 - 건축물 해체 허가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과도한 규제 정비 의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완화(안 제9조제1항) - (현행) 건축물 대지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 (개정)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 1.5배 이내의 버스정류장,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다만, 높이 5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3.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10.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제안이유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사회복지증진 및 노인·장애인 복지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의2) - (현행) 2024년 12월 31일
➡ (개정) 2029년 12월 31일
- 의결결과 : 원안가결

4.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10.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세무회계과장)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 완화 적용하고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른 용어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의 분할 납부 기준금액 변경(안 제63조)
 - 법령-자치법규 간 통일성 확보 및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안 제47조 및 별표) - (현행) 장애자용 화장실 ⇨ (개정) 장애인용 화장실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장성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 발의일자 : 2024. 10. 10.
- 발 의 자 : 장성군수(재난안전과)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에 배분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목적 (안 제1조)
 -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안 제2조 · 제3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6.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발의일자 : 2024. 10. 25.
-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제안이유
 - 2023. 11. 21. ~ 2024. 11. 20.까지 추진한 각종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상황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 실시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추진토록 지원하고, 미흡한 사항은 시정 · 개선함으로써 군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

7.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발의일자 : 2024. 10. 25.
- 발 의 자 : 서춘경, 심민섭, 오원석, 차상현, 나철원, 김연수, 최미화 의원
- 제안이유
 - 최근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인하여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쌀값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면서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음. 이에 농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이 필요함.
- 주요내용
 - 매년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등 경영비 증가에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며 쌀값 불안정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비축미 확대, 시장 격리 조치 강화,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 수립 및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